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공고 제2026 - 83호

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미이행 공시송달 공고

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23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9개월의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'폐문부재'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11. 4.

진 주 고 용 노 동 지 청 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인

1. 건 명: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하여야 함에도 2023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임금명세서 미교부
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항 및 제48조 제2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	주소	대표	과태료 내용	공시송달 내용
릿스터디카페 진주초전점	284-36-00932	경남 진주시 진주역로 55, 102동 1202호	손훈	2023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임금명세서 미교부	2026. 11. 17.까지 과태료 2,160,000원 부과 (기한 내 미납시 과태료 부과 예정)

4. 공고기간: 2026. 11. 4. ~ 2026. 9. 18.(15일간)
5. 납부 등 문의: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노동기준조사과(담당: 조희창, 055-760-6502)